8.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O 제출일자 : 2022년 10월 27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교육감

O 회부일자 : 2022년 10월 31일

O 상정일자 : 제2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년 12월 5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주진욱)

□ 제안이유

○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 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 과제의 이행 사항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에서 여러 개의 교습과 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O 열람실 남녀 좌석 구분 관련 조문 삭제(안 제3조의3)
- O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의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 완화(안 제3조의4)

3. 검토보고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노인만)

○ 본 개정조례안은 독서실에서 남녀의 좌석을 구분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합의 과제의 이행사항으로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에서여러 개의 교습과정 등록 시 요구되는 시설기준을 완화하기위함

○ 주요 내용으로는

- ▶ 안 제3의3에서, 단위 시설의 기준 중 열람실의 남녀별로 좌석을 구분하여 배열하도록 한 규정의 삭제
- ▶ 안 제3의4에서,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과정 운영 시 가장 큰 시설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단서조항 신설
 - 여러 개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면적 기준 : (현행) 모두 합한 면적 → (개선) 각각의 시설기준 중 가장 큰 면적기준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학원의 단위시설 기준 중 열람실에 적용되는
'남녀별 좌석 구분'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4)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⁴⁾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과정 운영 시 가장 큰 시설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합의 과제5)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기에 학원 설립·운영자의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음

- ▶ 특히, 독서실 열람실의 '남녀별 좌석 구분'과 관련하여 열 람실의 남녀 좌석을 구분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것은 독서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이 보장 되어야 하는 사적 영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운영자의 직업수행 자유와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바 학원의 자율성 보장과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사업 활동과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구 등 6개 시·도⁶⁾ 내 학원은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충족하면 여러 교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의 규제 해소의 측면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⁵⁾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420(2022.4.11.)

⁶⁾ 대구, 울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기존) 교습과정별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규모 요구(대구시 기준 보습(90㎡), 진학지도(80㎡) 동시 운영 시 170㎡ 이상 필요) → (개선)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학원은 가장 큰 면적기준만 갖추면 여러 교습과정 운영 가능(대구시 기준 보습(90㎡), 진학지도(80㎡) 동시 운영 시 90㎡ 이상 필요)

▶ 다만, 학원의 운영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한 학원 운영을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학원의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O 없 음

5. 토론요지

O 없 음

6. 수정안요지

O 없 음

7. 심사결과

O 원안가결(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요지

O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O 없 음